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김 성 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다루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연구는 종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거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목 구성 및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추산하기 위한 항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는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취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사회복지가 낙후되어 있는가? 또는 한국의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낙후되어 있다거나,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혹은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저 없이 지적할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사회복지지출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적다는 것이다(김태성, 1996; 홍경준, 1997).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중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선진국의 복지국가화 경향은 국민의 일상 생활 및 삶의 수준에 대한 국가 책임이 그만큼 증대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민의 생활이 자본주의적 시장 지배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가지게 되어, 최저 수준이든 최적 수준이든 시장체제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줄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란 결국 사회복지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 및 투자를 한다든지, 행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들이 욕구 충족이나 생계를 꾸리는 데 국가의 개입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정확성의 여부와 관련없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낙후되어 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통념(通念)이 사회복지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마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사회복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이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사실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전부일 수는 없지만 필요조건 혹은 전제임이 분명하다.¹⁾

물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도 연구자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이나, 사회복지재정통계를 산출하여 각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노인철·김수봉, 1996; 문진영, 1997; 이영환, 1997; 이혜경, 1995). 필자가 여기에서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추계가 매년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더욱이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면서 되풀이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은 정기적으로 통계기관이나 정부에서 산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실정은 통계의 산출 자체가 하나의 연구과제일 정도로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자료의 경우는 겨우 내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계는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추산할 때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지출은 어떻게 구성될 지를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나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될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보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지출의 구성

1.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지출이란 곧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쯤, 우리 나라 외채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짹짹매고, IMF의 실사단을 통해서야 외채규모를 확인받는 모습, 한쪽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외쳐대지만, 정작 우리 나라의 외채규모 즉 경제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한국정부가 제 나라의 외채통계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외국보도를 접하는 현실은 기초적 자료나 통계 축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에 의해 사회복지지출의 영역도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어 일단 사회복지재정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재정이란 역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국가책임에 의한 공공복지외에도 기업복지, 민간복지 등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재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국한시켜 생각할 수 있다.²⁾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활동이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Le grand & Robinson, 1985). 첫째, 급여(provision), 둘째, 보조(subsidy), 셋째, 규제(regulation)이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든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재정적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여의 강제화를 통한 기금에 의한 지출이나 세금에 의한 직접적 급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만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 주체는 없다. 2차 대전이후 약 20-30년간 전성기를 구가하던 복지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보수주의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요즈음 시기까지 여전히 국가의 영향은 사회복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든가, '최저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있다' 등의 이야기는 공공복지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정부의 책임에 의한 공공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곧 국가의 책임아래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이나 프로그램, 제도, 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에서 필수적인 재원의 규모와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사용되는가이다. 사회복지와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사회복지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국가의 활동은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두 행정부의 예산안과 입법부의 예산 감시활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 나라의 재정이 꾸려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2) 사회복지비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기업복지, 민간복지까지를 포함한다. 사회복지가 단순히 공공복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공공복지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아무리 복지후진국의 분류에 포함된다 고 하더라도 미국민의 삶의 질도 낮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 국민들의 국민생활최저선이나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은 여전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일차적으로 공공복지는 중요하다.

국가의 활동도 결국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사회복지에 쓰여지는 돈들도 결국은 행정부에 의해 예산이 수립되고, 이것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예산은 단순히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에 IMF에서 사용되는 재정운영방식은 통합예산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영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예산, 나아가 기금까지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과 같이 대부분의 재정이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는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의 규모나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복지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주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장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나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제도적 틀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칭해지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대표된다. 물론 국가마다 사회복지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크게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대인사회적 서비스로 구분짓기도 한다.³⁾ 하지만 이렇게 영역을 무한정 확대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추출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단점이 노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재정통계에서의 주요 영역과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여, 이후의 재정 추계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⁴⁾

2. 세계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통계의 사회복지 항목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 통계에 어떤 항목들

3) 이런 구분은 주로 사회정책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분야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경제와 관련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정책이 곧 사회복지와 동일시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국가의 책임에 의한 무상교육의 경우를 사회복지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켜야 할지는 역시 사회복지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4) 예를 들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전몰가족 혹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훈가족에 대한 급여나 서비스를 사회복지에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맥락이라면 의사상자(義死傷者) 구호나 재호구호, 귀순동포보호 등에 따른 부문도 사회복지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은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다만 본 글에서는 이들도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⁵⁾ 현재 사회복지재정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⁶⁾ 첫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같이 사회복지재정의 총량 규모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과, 둘째, 사회복지재정을 전문적으로 비교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대표적이다.⁷⁾

먼저 첫 번째 부류인 IMF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의 정부지출영역 안에 '사회보장 및 복지'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다음과 같다(IMF, 1986).

- | | |
|----------------------------------|-------------------|
| 1) 사회보장관련지출 : 1.1. 상병,출산,일시장애 급여 | 1.2. 공무원연금 체계 |
| 1.3. 노령,장애,유족 급여 | 1.4. 실업보상급여 |
| 1.5. 가족 및 아동수당 | 1.6. 사회부조 |
| 1.7. 기타 사회보장 관련지출 | |
| 2) 복지관련 지출 : 2.1.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비스 | 2.2. 노인복지시설 관련서비스 |
| 2.3.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서비스 | 2.4 기타 시설관련 서비스 |
| 2.5. 수용시설 이외의 복지서비스 | 2.6. 기타 복지서비스 |
| 3) 기타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 | |

-
- 5) 물론 어떤 식으로 비교하든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세한 추정 자체가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자체가 아직까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의 낙후된 사회복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이외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12개국을 대상으로 사회보호급여(social protection benefits)와 관계된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통계기구인 유럽공동체 통계국(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y:EUROSTAT) 자료나 유럽 북구 5개국, 즉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격년제로 발간되는 노르딕 사회보장통계(The Nordic Statistics on Social Security: NOSOSCO) 등이 있으나, NOSOSCO의 경우는 조사국가의 제한성으로 인해 비교의 유용성이 제한되고, EUROSTAT의 경우는 자발적 부문까지 포함하는 등 포괄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공공복지의 비교에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국제통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태수·김연명·문진영(1997)의 글을 주로 참조하였다.
- 7) ILO는 1950년대부터 가입국들의 사회보장비용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는 110여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통계를 『사회보장비용(The Cost of Social Security)』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한편, OECD는 회원국가들의 사회지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Base:SOCX)에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비용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Provisional Version)』라는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경우 의료보험과 관련된 지출-현물급여가 제외되고, 행정비용이 구분되지 않고, 수입구조에 대한 통계가 취약하며, 총량규모로만 파악하므로 세부항목별로의 분해가 불가능하여 다른 기준들과의 비교가 제한된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기관들 중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s)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ILO, 1996). 첫째, 제도의 목적이 ① 치료적이거나 예방적인 현물의료급여(medical care)를 제공해야 하며, ②소득 혹은 소득의 상당액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어야 하며, ③가족부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보충적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 의한 강제성 및 권리보장성 : 해당 제도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그 법에는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혹은 자치기구(autonomous body)에 대하여 구체화된 개인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나아가 기관들의 구체화된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공적 관리운영체계 :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혹은 자치기구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첫째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는 ILO규정 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한 ①의료(medical care), ②상병급여, ③실업급여, ④노령급여, ⑤산업재해급여, ⑥가족급여, ⑦출산급여, ⑧장해급여, ⑨유족급여 등이다(노동부, 1997).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사회보장비용 산출에 실제로 포함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강제사회보험, ②법률에 의한 강제성 및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임의성 사회보험, ③보편주의적 비기여제도, ④공적관리운영체계에 의한 준비기금(provident fund), ⑤고용상의 재해에 대한 고용주책임제도, ⑥가족급여, ⑦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⑧공공부문 피용인을 위한 특별제도, ⑨공적부조(의료보호 포함), ⑩첫째 기준을 만족시키는 전쟁희생자 원호제도, ⑪노사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산업적 혹은 직업상의 제도로 법으로 강제되며, 위의 세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 등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ILO의 기준에 따를 경우, 제도별 지출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급여를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피용자에 제한시키기 때문에 공적부조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한편, OECD에서 사회지출에 포함되는 범주는 모두 13개인데, ①노령 현금급여, ②장애 현금급여, ③산업재해 또는 직업병급여, ④상병급여, ⑤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⑥유족급여, ⑦가족현금급여, ⑧가족복지서비스, ⑨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ALMP), ⑩실업급여, ⑪보건부문 공공지출, ⑫주거급여(임대보조 및 현물급여), ⑬기타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행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ALMP(예:구직상담)와 보건부문 공공지출의 경우는 행정비용(예:병원운영비용)을 사회지출의 합계에 포함시키고 있다(이태수 외, 1997).

<표 1> OECD 사회보장비 항목의 분류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 노령연금 급여	1.1 일반노령연금 1.2 노령공무원연금 1.3 재향군인연금 1.4 기타노령연금 1.5 조기퇴직연금	1.1.1 개인급여 1.1.2 배우자보충급여 1.1.3 아동보충급여	7. 가족연금 급여	7.1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 7.2 가족지원급여 7.3 기타 피부양인 7.4 편부모(?) 7.5 기타가족 7.6 육아휴직	
2. 장애연금 급여	2.1 장애연금 2.2 장애공무원연금 2.3 장애아동연금 2.4 장애재향군인연금 2.5 기타장애연금	2.1.1 개인급여 2.1.2 배우자보충급여 2.1.3 아동보충급여	8. 가족복지 서비스	8.1 공식주간보호 8.2 개인서비스 8.3 가족서비스 8.4 기타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9.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9.1 노동시장의 교육 9.2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9.3 고용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9.1.1 현금 9.1.2 서비스 9.2.1 현금 9.2.2 서비스 9.3.1 현금 9.3.2 서비스 9.4.1 현금 9.4.2 서비스
4. 상병급여			10. 실업급여	10.1 실업보상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10.3 퇴직수당	
5. 노인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5.1 시설보호 5.2 가정봉사서비스 5.3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5.4 기타 현물급여	5.1.1 아동 5.1.2 65세미만의 성인 5.1.3 65세이상의 성인 5.2.1 아동 5.2.2 65세미만의 성인 5.2.3 65세이상의 성인 5.3.1 아동 5.3.2 65세미만의 성인 5.3.3 65세이상의 성인 5.4.1 아동 5.4.2 65세미만의 성인 5.4.3 65세이상의 성인	11. 보건부문급여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6. 유족급여	6.1 유족연금 6.2 유족공무원연금 6.3 유족현물급여 6.4 기타유족연금	6.1.1 배우자연금 6.1.2 고아연금 6.1.3 기타연금	12. 주거급여	12.1 임대보증 및 현금급여	12.1.1 노인 12.1.2 장애인 12.1.3 가족 12.1.4 기타
			13. 기타급여	13.1 저소득 13.2 빈궁한 자 13.3 기타 13.4 이민자 및 망명자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자료 : 고경환, 1997. "OECD의 사회보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통권 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3-6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IMF의 경우는 의료와 관련된 현물급여가 제외되고, 행정비 및 항목별 세부분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ILO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OECD의 사회보장비 항목의 분류가 가장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OECD의 경우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노동복지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Ⅲ.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사회복지비 항목

1. 우리 나라 기존 연구의 정리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추계는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용어도 연구자에 따라 사회보장재정(연하청 외, 1988), 사회보장비(이혜경, 1995), 공적 사회복지지출(손병돈, 1996), 사회복지비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⁸⁾ 이들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

연구자	용어	산출통계	산출기준	지방정부지출 포함 여부	비고
연하청 외(1988)	사회보장재정	재원별, 재원조달 방법별, 지출별, 내용별, 급여종류, 제도별 등	ILO, 국제사회보장협회 참고	○	
이혜경(1995)	사회보장비	제도별, 재원별, 재원조달방법 등		○	
손병돈(1996)	공적 사회복지지출	제도별	ILO	×	
노인철·김수봉(1996)	사회보장재정	재원별, 지출별, 제도별 등	ILO, IMF, OECD 참고	○	근로자복지 포함
고경환(1998)	사회보장비	급여별	OECD	×	퇴직금 포함

8) 이외에도 정부의 일반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예산(문진영, 1997), 사회복지예산(이영환, 1997)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실제 수급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연구를 했건, 다른 연구와 병행하여 필요에 의해 추계를 했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계점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연구자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각자가 참고하는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연구가 이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어 추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를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지방정부 지출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 복지를 포함한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필자가 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의 낙후성을 보여주기 위한 비교의 필요성 혹은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관찰이 사회복지지출 추계의 통일된 기준 설정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했던 지간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수행된 추계는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굳이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교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기반이 되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⁹⁾ 왜냐하면 정확성에 기반한 추계에 의할 때만이 비교연구나 시계열연구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이들 연구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연구는 고경환의 최근의 연구이다(1997, 1998). 그는 OECD 기준에 맞추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을 급여별로 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지출 부문별로 관련 급여제도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사회복지지출 부문별 관련 급여제도 및 담당부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은데, 이러한 분류는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데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자료이다.

다만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점은 국가복지와 기업복지의 구분 문제¹¹⁾와 이로 인해 비롯되는 실제 자료의 생산 가능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제시된 질병급여와 가족현금급여의 출산유급휴가 외에 기업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휴업보상, 귀향여비와 같은 현금급여와,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은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되므로 국가복지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떤 범주에 포함시킬 지가 애매할 뿐 아니라 자료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생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9)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10) 물론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통일된 기준에 의한 추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연구의 전반적인 논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는 서론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한 추계를 확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1) 이러한 경우는 고경환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1997년 연구에서는 질병급여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고경환, 1997), 1998년 연구에서는 질병급여에 각 사업장의 유급병가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자료는 미생산)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3> OECD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부문과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및 주관 기관
1. 노령연금급여	<복지부>국민연금, <총무처>공무원연금,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2. 장애연금급여	<복지부>국민연금, <총무처>공무원연금,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보훈처>장해(상이)연금
3. 산업재해 및 작업병 급여	<노동부>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4. 상병급여	(각 사업장의 유급병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
5.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부>의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지출 <노동부>의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교육부>의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운영지원 <지방정부>
6. 유족급여	<복지부>국민연금, <총무처>공무원연금,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보훈처>국가보훈의 유족연금
7. 가족연금급여	편부모가정지원(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등), (각 사업장의 출산유급휴가), <보훈처>국가보훈의 학자금 지원, <지방정부>
8. 가족복지서비스	<복지부>보육·아동사업, 복지관 운영 등 지원, <지방정부>
9.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램	<노동부>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및 각 지방노동관서운영비 지원,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능력, 고용촉진 등의 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술훈련, 고용촉진, 시설확충사업
10. 실업급여	<노동부>고용보험,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지급액
11. 보건부문 공공지출	<복지부>의료보험, 의료보호, (보건소와 관련된 지출) ¹⁾ <노동부>산재보험의 요양급여
12. 주거급여	
13. 기타급여	<복지부>생활보호제도의 현금급여와 일부 현물급여, <내무부>재해구호 <지방정부>

()는 생산하기 어려운 자료.

주 : 1) 고경환(1998)은 보건부문 공공지출에 국민계정 상의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 중 보건지출을 포함 하고 있으나, 포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다.

자료 : 고경환. 1997. "OECD의 사회복지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통권 7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pp.53-62 중에서 표 2와, 고경환. 1998.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장비지출 규모". 보건복지포럼. 통권 2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7-77 중에서 표 3을 참고하여 재작성 함.

또 다른 문제는 보건부문 공공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 보건부문 공공지출이란 중앙 및 지방정부, 보건위원회와 사회보험기관이 지출하는 치료 및 의료, 의약품

지불비용 및 이와 관련된 병원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문은 보건소와 관련된 지출 중 직접적인 진료나 치료와 관련된 부분과 보건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항목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구성해보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나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분류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체계적인 통계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생산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재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이태수 외, 1997).

첫째, 급여비와 행정비 및 사업비(자본지출)의 구분이 쉽지 않다. 둘째,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 1995년부터 수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사회보장예산', '사회개발예산'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의 지출비용만 포함되고,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제외되어 의료보험 조합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연금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타부처 즉 노동부(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나 총무처(공무원연금),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보훈처(보훈연금 등) 등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한편, 사회개발예산의 경우에는 국제통계에서 제외되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주택건설 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일적인 비교가 힘들다.

한편, 재정경제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재정통계』는 IMF의 분류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인데, 여기에서 중앙정부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 분류에 '사회보장 및 복지'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그나마 국제비교가 가능한 편이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 총무처 등의 사회보장관련 예산이 통합 산출되므로 포괄성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ILO나 OECD의 분류에 따른 비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도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관계로 항목별로 일관되게 비교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세부영역내에서도 분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지출의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제한적이거나 각 기구별 사회복지지출 항목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일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항목을 구성해 보면 <표 4>와 같다.¹²⁾

12) ILO의 경우는 급여지출을 중심으로 한 것임.

<표 4>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사회복지비 항목

구 분			복지부				노동부			총무처	국방부	보훈처	행자부	통일원	지방정부
IMF	ILO	OECD ¹⁾	국민연금	의료보험	생활보호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제도	공 ²⁾ 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사업	재해구호	귀순동포보호	
상병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													
	의료	보건부문		0											
출산급여	출산급여	공공지출 ³⁾			0										
일시장애급여															
공무원연금 체계	(노령,장애유족 급여)	노령현금급여								0		0			
	노령급여	노령현금급여	0										0		
	장애급여	장애현금급여	0							0					
	유족급여	유족급여	0							0					
											0				
기타사회보장 관련지출	산업재해 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0							
실업보상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0								
가족 및 아동수당	가족급여	가족현금급여													
사회부조		기타급여-저소득, 빈궁한 자		0									0		0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0									0
노인복지시설 관련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0									0
장애인복지 시설관련 서비스						0									0
기타시설관련 서비스							0								0
수용시설 이외의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서비스				0									0
기타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서비스				0									0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0				
		주거급여													
		기타급여- 이민자 및 망명자												0	

주 : 1) OECD의 항목은 <표 1>의 '부문'을 기준으로 하되, 분류가 중복되는 경우는 '관심영역'도 참고했음.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포함
 3) OECD의 항목에는 출산급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부문 공공지출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표 4>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지출을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OECD의 분류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IMF나 ILO의 통계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다.

IV. 마치는 말

지금까지 사회복지지출은 어떻게 구성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우리 나라 사회복지지출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지출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가 여기에서 제시한 것을 기초로 하되, 이에 대한 공식화 작업이 이후에도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추산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제도에 따라 부처별(보건복지부, 노동부, 총무처, 국방부, 보건처, 통일원 등)로 산재되어 있으며, 이를 일관되게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를 시도할 경우, 그 때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 자료들은 각기 따로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계생산을 타부처에 정기적으로 의뢰하여 취합하는 역할이 필요할 뿐 아니라(고경환, 1997), 기본 통계 자료에 대한 공개도 정기적으로 펴야 이루어져야 한다.¹³⁾ 또한 현재는 제도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부처별(보건복지부, 노동부 등)로 어느 정도 통계생산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출처별(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 등, 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급여별(노령급여, 실업급여 등 혹은 현금, 현물) 등으로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제도와 관련된 지출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예산안에 대한 정리만 있을 뿐 실제 지출된 실적에 관한 통계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한편, 우리가 사회복지지출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지출구조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다. 앞에서 살펴본 제도 중 사회보험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제도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특례노령연금이나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1995년 고용보험의 실시로 이와 관련된 지출도 상대적으로 늘어

13) 심지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취급되어 제대로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의 정리해고 문제에서 빚어지는 고실업 사태에서는 고용보험에 의한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사회복지지출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되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이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에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기존 제도내의 문제로서 급여의 관대성과 포괄성의 문제이다. 즉 기존 제도가 가지는 급여의 관대성-연금이 나 실업급여, 산재급여의 임금대체율, 공적부조의 수준 등-을 얼마 만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위험의 포괄성-가족수당, 상병급여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할 것인가 문제와 직결된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회적 불리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지출을 살펴볼 경우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제도들은 이미 주어진 급여공식에 의해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상인구의 증가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매년 짜여지는 정부의 예산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므로 이는 사회복지의 확대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회복지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증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둘째, 지출의 절대액도 중요하지만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조세의 세입구조나 사회보험의 기여형태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티트머스가 조세복지라고 칭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주로 지출을 다룬 것은 지출 조차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지출은 경제의 3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에서 각각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더 부담하느냐에 따라 수혜자의 실제 급여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제도들은 대부분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부담분이 큰 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지출을 고찰할 때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전체적인 평등도를 고려한다면 세입구조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입에서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가 가지는 평등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원래 정부의 재정기능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급여의 증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

셋째,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기업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업에서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업복지에 포함되지도 않고 국가복지의 지출부문으로 계

산하기에는 자료생산이 어려운 부분(유급병가, 유급출산휴가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들 모두는 사용자의 부담아래 기업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법률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복지가 아니라 실은 공적 사회복지 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 생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비용을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행정비용도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제도나 프로그램이든 이를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운영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존재 유무가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앞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지출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있게 관리 운영해야 됨은 물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끊임 없이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로 올바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환. 1997. "OECD의 사회보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통권 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3-62.
- _____. 1998.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규모". 보건복지포럼. 통권 2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67-77.
- 김태성. 1996. "한국의 사회복지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비용편익분석적 관점". 사회복지연구. 제8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 1-40.
- 노동부. <http://www.molab.go.kr>-노동자료-ILO규정.
- 노인철·김수봉. 1996. 사회보장제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 1997. "문민정부 사회보장예산의 현황과 과제". 미발표 원고.
- 손병돈. 1996.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외국과의 비교: ILO 사회보장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 연하청 외. 1988.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이영환. 1997. "사회복지예산의 현실과 개혁의 과제". 상황과 복지. 제2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 93-110.
- 이태수·김연명·문진영. 1997. "사회보장비용 통계산출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13권. 제1호. pp. 247-276.
- 이혜경. 1995.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세사회복지연구. 제2호. pp. 125-146.
- 재정경제원(구 재무부). 각년도. 한국의 재정통계.
- 통계청. 각년도. 한국주요경제지표.
- 홍경준. 1997. "한국의 공공복지는 왜 낙후되어 있나?:제도의 제약과 행위자의 선택을 찾아서". 한국사회복지학. 제3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 396-420.
- ILO. 1996. *The Cost of Social Security: Fourteenth International Inquiry 1987-1989*. Comparative tables. Geneva.
- IMF. 1986.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86*. pp.158-160. 이태수외(1997)에서 재인용.
- Le grand, J. & R. Robinson. 1985. "Privatisation and Welfare State:An Introduction." Le grand, J. & R. Robinson. eds. *Privatisation and Welfare State*. George Allen & Unwin.
- OECD. 1996a.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 _____. 1996b.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17.

Abstract

How is Produce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in Korea?

Kim, Sung Han

The scale of Social expenditure is significant yardstick to evaluate the standard of development in social welfare. But, it was not produced systemically, continuously in Korea.

This study is to search how is produce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tudied how it is defined, classified, and categorize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institute such as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is paper suggests that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in Korea must be calculated continuously, systemically, and is collected periodically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paper also shows what is considered to understand social expenditure in Korea.

Tel : 0654-469-4512

Fax : 0654-469-4511

E-mail : shankim@ks.kunsan.ac.kr, 천리안 shankim